

『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』에 대한

제안 설명

□ 존경하는 이영실 위원장님!

그리고 선배·동료 의원님 여러분!

안녕하십니까?

더불어민주당 서초구 제2선거구 출신 김경영 의원입니다.

『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』

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해
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

□ 지금부터

『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』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
□ 조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,

『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』이 개정됨에
따라 결산 기한을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로 변경하고
『서울특별시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』에서 정해진

기한 이내에 예산서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조례에 명시하고자 하였습니다.

□ 존경하는 이영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!

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의 조례 개정 취지를 이해하셔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며, 이상 조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